

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. 4. 27 선고 2014가단1461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]

전 문

원 고 망 A의 소송수계인

1. B
2. C
3. D
4. E

피 고 1. F

2. G

변론 종결 2015. 4. 8.

판결 선고 2015. 4. 27.

주 문

1.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들은 원고들에게,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/15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

2010. 9. 24. 접수 제2832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당사자 관계

망 A(이하 '망인'이라 한다)은 H와 혼인하여 슬하에 장남 피고 F와 원고들, I 총 6남매를 두었다. 피고 G는 피고 F의 처로 망인과 H의 며느리이다. 망인은 이 사건 소송중인 2014. 10. 15. 사망하였다.

나.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

망인은 2010. 9. 24. 망인 소유인 안동시 J 답 3899.2㎡에 관하여 피고 F에게 2068/3899.2 지분, 피고 G에게 1831.2/3899.2 지분씩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(이하 위 부동산을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하고, 피고들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틀어 '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'라 한다).

[인정근거] 갑 제1, 3, 19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가. 원고들의 주장

(1) 피고 F는 2010. 9. 24.경 당시 노환으로 투병 중이던 망인에게 찾아와 먹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, 이에 겁을 먹은 망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게 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. 피고 F의 이와 같은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증여는 민법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이다. 따라서 이 사건

소유권이전등기 중 원고들이 상속한 각 2/15 지분은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.

(2) 만약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증여가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, 피고 F는 망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면 장남인 피고 부부가 생활비와 병원비를 모두 부담하는 등 망인 부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였고, 망인은 이를 믿고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. 그러나 피고 F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는 약속을 어기고 망인부부에 대한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, 망인은 민법 제556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의 송달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다. 따라서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중 원고들이 상속한 각 2/15지분은 해제에 의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말소되어야 한다.

나. 판단

(1) 먼저 망인의 증여행위가 피고 F의 폭력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인지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, 갑 제5 내지 8, 12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증여가 피고 F의 폭력행사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(망인의 처인 H이 작성한 갑 제12호증은, H이 이와 정반대의 을 제23호증을 작성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).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.

(2) 다음으로 망인의 증여행위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, 갑 제11 내지 15, 17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망인이 망인 부부에 대한 부양의무를 조건으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. 만약 원고들 주장과 같이 망인이 부양의무를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,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들이 망인 부부에 대한 부양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.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수정

별 지

1. 안동시 답3899.2㎡

원고 공유자 지분 3899.2분의 2068

원고 공유자 지분 3899.2분의 1831.2

- 이 상 -

